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

서진석*

요 약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rough Monitoring Solution Child Abuse and Children's Rights at Child Care Center

Seo Jin Seok*

ABSTRACT

Child abuse is urgent and important issue that dominates child's life and influences lifetime. Especially, the children who use the daycare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ill-treatment because of young age, resulting in being serious in a later-affect of its abuse. In case of being serious, a child may lead to death. Also, the main agent is absent that will speak for the abused child's injustice and ask for help. Thus, the child abuse has many cases of coming to a close always as children's miserable sacrifice. Hence, the child care center employees will need to recognize a fact that the child abuse is not a private problem within home any more, but a serious crime, and to be confronted by early finding and reporting abuse as a responsible person for report. When the child care center employees fully perform a role as a responsible person for report of child abuse and when the cooperation between child protection service and day care center is properly made after report, the daycare facilities will be able to play a role of child safety network, which protects children of being put in the exclusion.

Key Words: Child abuse; Children's rights; Monitoring; Child care center

1. 서 론

“2011년 2월 9일 3세 아동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채 공사장에서 발견됨. 3월 6일 다시 3세 아동이 아버지에게 짓밟혀 숨짐. 3월 18일 초등학교 아들을 폭행해 하반신 장애로 만든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됨”. 이 사건들이 OECD 회원국이며 G20에 속한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아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때까지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아무것도 없었던가?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의 슬하에 다른 자녀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가장 무력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폭력으로, 이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이자 제 3, 4의 사건이 잇따르게 방치하는 암묵적 방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시행된 영아 무상교육 등으로 보다 어린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보장은 더욱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생존의 권리를 지니며(제6조),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나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므로(제19조) 협약 당사국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0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8세까지 유아를 위한 “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을 채택하여 유아기를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나아가는 미성숙한 과정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유아도 자신의 관심과 관점을 지닌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일차적으로 보호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자신의 개별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에 관여된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장치의 미흡, 통학차량 이동의 안전성 부족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의한 아동학대도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밝고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키워져야 할 어린이가 일부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일이라면 일단 남의 일로 받아들이고 깊숙이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어린이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10월 발표된 자료인 ‘2011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에 의하면 한 해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수는 8,325건으로 이중 응급성이 있는 신고는 958건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연구 자료와 각종 공식적 통계를 포함한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들

2.1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

2.1.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1]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행위나 잘못된 양육 등을 모두 일컫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가장 고전적 정의는 ‘피학대아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e)’을 처음으로 소개한 Kempe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로 구분되며 그 범주에 방임과 유기가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아동학대의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네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아동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과 서비스의 불충분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방임 개입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아동방임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 한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방임에는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의 특성의 차이점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계획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보호자의 적대적이고, 계획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다. 반면에, 아동방임은 아동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잘 보살펴주지 않으며, 아동복지에 관심 없어 하는 소극적인 행동이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가해 행위이며 아동방임은 해주어야 할 것을 안 해주는 태만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는 학대의 표적(target)이 있으나, 방임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표적이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주로 소수의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방임은 다수의 아동 모두가 방치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한명에서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2.1.2 아동학대의 유형과 별칙

<표 1>은 아동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와 별칙이다.

<표 1> 아동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및 별칙

학대 유형	개 념	구체적행위	별 칙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꺾어짜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행위 •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아동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 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1) 따라서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체벌이외에도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제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 또한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12. 21(화)조간).

	<p>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p>	<p>만지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매춘이나 아동매매 행위</p>	<p>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만원 이하의 벌금</p>
<p>방임 및 유기</p>	<p>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p>	<p>▶물리적 방임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 부천대 사회교육원 어린이연구센터 제공 자료.

2.2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

2.2.1 아동권리의 정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권리의 4대 일반원칙을 아동의 최선이익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 의사존중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협약 제3조, 제2조, 제6조, 제12조). 이들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이라 하겠는데, 이는 협약의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에서는 협약에 규정된 모든 아동권리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협약 제2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조항에 나타난 아동권리의 영역(cluster)을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조건과 복지, 교육 그리고 특별보호조치 등의 8개로 구분하였다.

2.2.2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은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성인보다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고, 실제로 아동들만이 부딪치게 되는 위험도 있다. 이처럼 아동이 소유한 일부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다른 유형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의 특수한 상황들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다.

모니터링 활동은 아동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이러한 강제적 준수 의무를 갖고 있는 협약의 비준국가들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라 평가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매 5년마다 아동권리 증진 이행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하는 일은 ‘국제적 차원’의 아동권리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을 뱀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43조에 근거하여 1991년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가 2005년에 18명으로 증원되었다. 위원회는 년 3회(1월, 5월,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데, 한 회기는 3주 동안 열려 9개 나라를 심의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할 나라들을 예비 심의한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UN 아동권리위원회와 아동전문가들은 개별국가들도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토록 권장하고 이다. 특히,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협약비준국(2007년 4월 현재, 193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 및 비상설포함,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에 불과하다.

아동권리의 모니터링은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험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특히 아동의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옹호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은 정부가 아동의 실제적인 욕구에 반응하게 하는데 압력을 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개념의 아동권리모니터링은 국제적 수준에서부터 국가(정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민간단체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 될 수 있다.[2]

우리나라는 2007년 상설기구로서‘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운영의 초기단계이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활동의 한계가 있지만, 협약 비준국이 된 이후 무려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뤄온 과제가 해결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과 사례들

3.1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 분석

3.1.1 아동학대 추이 분석

<표 2>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이다. 아동학대 총상담 신고 건수는 2005년 8,000건에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 대비 약 10% 가하여 2011년에는 10,146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이며, 그 중 6,058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또한 전체 추계 아동인구²⁾ 대비 피해아동보호율³⁾ 도 2005년 0.42%, 2008년 0.53%, 2011년 0.6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이동추계인구(만0-17세): 9,688,376명(통계청, 2011년 추계인구자료).

3) 피해아동보호율(%) = (아동학대판정사례/총아동추계인구)×1,000

<표2>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 상담 신고 건수	아동학대 신고건수 ¹⁾	재신고 건수(%) ²⁾	학대 피해 보호현황 보호율		재학대건수 (%)
				보호건수 ³⁾	보호율 ⁴⁾	
2005	8,000	5,761	573(7.2)	4,633	0.42	573(12.3)
2006	8,903	6,452	684(7.7)	5,202	0.48	492(9.5)
2007	9,478	7,083	957(10.1)	5,581	0.52	646(11.6)
2008	9,570	7,219	930(9.7)	5,578	0.53	494(8.9)
2009	9,309	7,354	1,134(12.2)	5,685	0.55	581(10.2)
2010	9,199	7,406	1,262(13.7)	5,657	0.57	503(8.9)
2011	10,146	8,325	1,325(13.1)	6,058	0.63	563(9.3)

*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받은 건수

2)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된 사례의 접수 건수

3) 아동학대 신고 받은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4) 아동학대 보호건수를 추계아동인구로 나눈 수치

로,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비율을 나타냄.

아래 <표 3>에 의하면 2011년 학대 유형으로 중복 학대가 2,621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학대 226건(3.7%), 유기 53건(0.9%)임을 알 수 있다.

<표3>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중복포함)
(단위 : 건, %)

구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5	4,633	423(9.1)	512(11.1)	206(4.4)	1,635(35.3)	147(3.2)	1,710(36.9)
2006	5,202	439(8.4)	604(11.6)	249(4.8)	2,035(39.1)	76(1.5)	1,799(34.6)
2007	5,581	473(8.5)	589(10.6)	266(4.8)	2,107(37.7)	59(1.0)	2,087(37.4)
2008	5,578	422(7.6)	683(12.2)	284(5.1)	2,237(40.1)	57(1.0)	1,895(34.0)
2009	5,685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2010	5,657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2011	6,058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621(43.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년 학대행위자별 현황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기타이고 조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표4>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부모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6)	4,734 (83.3)	4,709 (83.2)	5,039 (83.2)
조부모	141 (3.0)	186 (3.6)	205 (3.7)	194 (3.5)	230 (4.0)	182 (3.2)	194 (3.2)
친인척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6)	131 (2.2)
형제자매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부모동거인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기타	421 (9.1)	466 (9.0)	615 (11.0)	420 (7.5)	476 (8.4)	529 (9.4)	581 (9.6)

*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기타 :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 사람, 파악 안되는 경우 포함

3.1.2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현황 분석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가 증가하였다. 시설 유형 중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하였다.

<표 5> 2011년 아동학대 발생장소

구분	건수(비율)	구분	건수(비율)
가정 내	5,246 (86.6)	학교	67 (1.1)
접근처 또는 길가	150 (2.5)	학원	27 (0.5)
친척집	46 (0.8)	병원	53 (0.9)
이웃집	33 (0.5)	복지시설	111 (1.8)
어린이집	159 (2.6)	기타	159 (2.6)
유치원	3 (0.0)	파악 안 됨	4 (0.1)
계			6,058 (100.0)

*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6> 연도별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사례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9	2010	2011
어린이집	67 (25.4)	100 (44.1)	159 (58.9)
복지시설	197 (74.6)	127 (55.9)	111 (41.1)
계	264 (100.0)	227 (100.0)	270 (100.0)

*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남성(23.7%)보다 여성(76.3%)이 많았고,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45.4%였으며, 그 중에서 어린이집의 경우 52.6%를 차지하고 있다.

<표7>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구분	남	여	계
어린이집	19 (11.9)	140 (88.1)	159 (100.0)
복지시설	45 (40.5)	66 (59.5)	111 (100.0)
계	64 (23.7)	206 (76.3)	270 (100.0)

*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표8>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 (52.6)	(35.1)	2 (45.4)
중독문제	(0.9)	(2.9)	(1.7)
질환문제	(0.0)	(1.2)	(0.5)
성격 및 기질문제	1 (16.5)	(20.0)	1 (17.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 (14.2)	(15.5)	(14.8)
어릴 적 학대경험	(0.6)	(2.9)	(1.5)
폭력성	(0.9)	(2.0)	(1.3)
전과력	(0.0)	(0.4)	(0.2)
성문제	(0.0)	(0.4)	(0.2)
원치 않는 아동	(0.6)	(1.6)	(1.0)
부부 및 가족갈등	(1.7)	(4.9)	(3.0)
종교문제	(0.0)	(0.8)	(0.3)
특성 없음	1 (8.8)	(7.3)	(8.2)
기타	(1.1)	(0.8)	(1.0)
파악 안 됨	(2.3)	(4.1)	(3.0)
계	3 (100.0)	2 (100.0)	5 (100.0)

*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2.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들

주요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는 크게 원장에 의한 사례와 교사에 의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3.2.1 원장에 의한 학대 사례

3.2.1.1 우는 아이 입에 거즈를 틀어막은 어린이집 원장 구속(조선닷컴, 입력 2013. 4. 7)

우는 아이의 입에 거즈를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 독 송경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양모(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양씨는 2011년 2월 원생 중 한 명이 시끄럽게 운다고 입을 거즈 손수건으로 틀어막는 등 지난해 1월까지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입속에 우유를 쏟아 부어 토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지난해 1월 양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이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3]

3.2.1.2 한 살도 안된 영아에 “빨리 X먹어, XX야” 어린이집 원장이 머리 때리고 방에 가둬(조선닷컴, 입력 2013. 2. 22)

생후 12개월도 안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우유를 먹인 혐의 등으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구 방이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60.여)씨는 작년 10월 15일 오후 한모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방 안에 가둔 혐의다. 그는 때 우유를 한군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으면서, “빨리 X먹어, 이XX야”라고 폭언하며 학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군을 포함

한 3명의 영아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씨가 2001년부터 운영한 이 어린이집은 원생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호법상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경찰은 어린이집의 전직 보육교사, 실습생 다수로부터 “박씨가 상습적으로 영아를 학대했다”는 일지된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는 또 정신병력이 있는 자기 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1,1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4]

3.2.2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사례

3.2.2.1 우는 아이 감금·폭행 보육교사 기소의견 송치방침(조선닷컴, 입력 2013. 3. 31. 09:24)

경찰이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정어린이집 화장실에 아동을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9.여)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소재 가정어린이집 화장실에 당시 생후 23개월이던 B양을 가두고 옆구리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B양의 부모, 광산구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청 및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대로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A씨가 엄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피해 어린이를 가두고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장조사 및 청문절차를 진행해 A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린 바 있다.[5]

3.2.2.2 “22개월 여아에 피명… 보육교사 소행” 논란(조선닷컴, 입력 2012. 11. 16. 16:39/수정 2012. 11. 16. 16:49)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2개월 된 여

자 아이를 때리고 꼬집어 얼굴에 피멍이 들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피해를 본 아이의 이모부라는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아이의 부모대신 사연을 올렸다”며 귀와 귀 뒷부분에 피멍이 든 어린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글쓴이는 “12일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집이 끝난 시간에) 아이를 내려놓고 도망가듯 가버렸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 아이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었다”며 “아이의 양쪽 귀에 선명하게 피멍이 들어 있었고, 목 부근에는 활판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들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상처에 대해 묻자 어린이집 측에서는 ‘부딪혀 생긴 상처’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상해서 어린이집을 추궁하자 ‘같은 원생이 때려서 그랬다고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또 “아무리 봐도 같은 원생끼리 싸워서 생긴 피멍과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다 구체적으로 캐묻자, 어린이집측은 그제야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귀를 잡고 흔들었다. 그것도 담임이 아닌 다른 반 선생님이 (그랬다)’라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16일 해당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대전 동구청은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온 날 곧바로 사실 여부 조사에 나섰고,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사를 바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6]

3.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규

3.3.1 아동학대 관련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법이 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했다.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2011년 8월 4일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신고 청구제,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다.

3.3.2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해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특히 유기 행위는 2011년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2011년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사항이 신설되었(<표10> 참조).

<표10>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조치관련 개정 내용

개정년도	아동학대 및 조치관련 개정 내용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유형: 어린이집 내 모든 영유아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금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관련 교육 포함 -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

2012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사항: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	---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2012년(8.5)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로는 학대 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상 지원을 3~6개월간 중단하며,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 참여 시설에서 학대사실을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을 취소한다. 또한 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형사고소 고발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에는 아동학대 등으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4. 어린이집 아동학대 해결방안

4.1. 정책적 해결방안

어린이집에서의 가혹행위는 해마다 2~3차례씩 과장을 일으켜 왔다. 영유아가 발로 차이고, 뺨을 맞거나 발가벗겨진 채 건물 밖에서 있는 등 충격적이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보도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의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까지 좌절시킨다. 또한 어린이집이 안전한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의 정책적 조치와

보육현장의 노력까지 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규제 일변의 해결방안 보다는 이를 근절할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7]

첫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체벌금지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건강·영양·안전 관련 조항은 있으나 정작 영유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가혹행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교사 근무환경의 개선이다. 대다수 보육교사는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한다. 과도한 업무피로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규정 강화이다. 일례로 올해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영유아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놀이는 발달의 핵심요소로, 어린이집에 실외놀이 공간이 필수적이어서 하는 이유이다. 놀이공간의 제한과 협소함은 영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영유아들 간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영유아의 발달연령에 따른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이 원장·교사에게 제공돼야 한다. 일례로 만 2세는 ‘끔찍한 2세’로 불린다. 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자기주장이 강해 ‘싫어’라고 말하는 것을 즐긴다. 부모들조차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달시기이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드러난 영유아 신체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이 연령대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 사건⁴⁾은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촉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다.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 사건이 위기개입 시점을 놓쳐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

4)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1991년에 태어난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는 가난을 피해 영국으로 건너와 친척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다. 그 이후 보호를 해주던 친척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학대와 폭행을 당하던 이 아이는 결국 2000년에 이들의 폭행으로 죽고 만다.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보건장관과 내무장관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영국의 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병원과 경찰의 역할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아동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고, 기존의 아동보호제도를 '실패한 아동보호서비스'로 규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영국 '아동법1989'를 전면 개정한 '아동법2004'를 탄생시켰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나와야 할 때다.

4.2. 보육시설종사자의 역할에 따른 해결방안

4.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의무자⁵⁾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신원노출과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신원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2.2 보육시설종사자의 역할에 따른 해결방안

보육시설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로서 학대받는 아동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아동을 보호·교육하면서 아동을 잘 관찰할 수 있으며,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아동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어 타 신고의무자에 비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학대후유증이 심각하므로 어린 이집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후유증을 조속히 치료하여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반드시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및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의뢰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시설종사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4.2.2.1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는 그 후유증이 장기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11>에 나타난 아동학대 유형별 신체적 및 행동적 징후를 숙지한다면 보육시설 내에서 학대피해아동 발견이 용이할 수 있다.

<표 11> 아동학대 유형별 신체적 및 행동적 징후

학 대 유형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및 회복에 시 간차가 있는 상처 -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거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
정서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수면장애, 놀이장애 등 신경성 기질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 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 지연, 자살시도
성학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 임신 ◦ 생식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치 너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굳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항문 증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 괄약근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칼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 리움 ◦ 구강 증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염질(pharyn geal g onorrho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性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및 성적행동 - 명백하고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 동물 혹은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 비(非)성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장애 - 유노증/유분증 - 위축, 환상, 유아적행동(퇴행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장애 - 특정 유형의 사람 혹은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비행, 가출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 시도) - 범죄행위 - 우울, 사회관계 단절

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칙적 식사 또는 잦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 비위생적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 한 옷차림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	---	--

* 부천대 사회교육원 어린이연구센터 제공 자료.

또한, 피해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정환경도 아동학대 의심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 아동의 부모님이 실직하였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한 경우, 아동의 상처 등에 대한 보호자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가 자주 음주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린이집 교사 혹은 다른 부모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을 자주 혹은 제 시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뒤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엔 보육시설 종사는 피해아동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4.2.2.2 아동학대 신고하기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등으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시, 보육시설 종사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는 학대 의심 증거, 학대 발견 시 정황, 학대 상처, 학대 지속성 등 학대의심내용과, 피해아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피해아동의 정보, 학대행위자의 이름, 전화번호 직업 등 학대행위자의 정보,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신고자는 자신이 학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신고접수 시 많은 도움이 된다.

4.2.2.3 협력 및 지원

아동학대가 사실로 판정된 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종사자는 학대피해 후 피해아동의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동이 하는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아동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도 피해아동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나친 반응 및 신체접촉은 아동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을 관찰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면담하는 경우 알고 있는 사실 모두를 말하는 것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대발생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향후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5. 결 론

전문가들의 견해[8]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보호권 보장 실패는 전반적으로 건강·영양관리와 안전보호 수준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동학대 개념과 규정에 대한 인식 즉 피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체계,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육료 지원 중단 등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므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표준보수교육과정에 이하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과목의 교육시간은 보육교사 승급과정의 경우 4시간이고,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의 경우 2시간에 불과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내용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동학대 조치에 대한 인식 부족 이외에도 신고 후 신변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홍미외 1(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07. 6) pp.48-50.인용.
- [2]<http://educare.or.kr/common/printForm.html?target=div-print&title=중앙보육정보...2013.4.10.>"아동권리 모니터링은 왜 필요한가?", 이진원.
- [3]
- [4]
- [5]
- [6]
- [7] 조선일보. 2011.10.27 23:5. 황옥경 '어린이집 학대' 아동보호 정책의 실패다.
- [8] 유해미(2012),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권 보장 실태와 개선 과제", 「육아정책연구」, 제6권 제1호(2012. 6), pp.142~164. 육아정책연구소.

[저자소개]



서진석(Seo, Jin-Seok)

1987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사
 1992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석사
 2000년 2월 경원대학교 행정학박사
 2002년 3월 ~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부교수

Email : woonlim@hanmail.net